

산학협력단정관

제 정 2004. 3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 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안에 둔다.

제4조 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제5조 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및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2장 조 직

제6조 (이사) ①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7조 (단장) ①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 (행정사무) ①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행정부서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 (운영위원회) ①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 (재산의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제11조 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
제12조 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3조 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 (비밀유지의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 (정관의변경) 총장은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6조 (해산) ①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.

④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17조 (공고) ①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가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나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

다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 공고방법은 일반인이 많이 구독하는 일간지(신문)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